

【 5 】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1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7조(결산 및 보고)의 일부 항이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제3항 및 제4항에 배치되어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기금운용 결산보고서 보고에 따른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개정하고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보고에서 제출로 개정.
(안 제7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결산 및 보고)중 제1항의 “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”를 “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”로 하며 제2항의 “보고”를 “제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7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of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<u>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</u>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를 <u>군의회에 보고</u>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7조(결산 및 보고) ①----- ----- -----<u>출납폐쇄후 3월</u> <u>이내에</u>----- ②----- -----<u>제출</u> -----</p> |

第4章 地方財政·地籍

第1節 地方財政

●地方財政法^(1988·4·6) 法律第4006號全文改正

改正 1990·12·27 法律第4268號(政府組織法)
1991·12·31 法律第4466號
1994·12·22 法律第4795號
1995·1·5 法律第4868號(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)

第1章 總 則

第1條 (目的)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및 會計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여 地方財政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管理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 (財政運營의 基本原則)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國家의 政策에 반하거나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內務部長官은 地方財政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研究·開發하여 施行하여야 한다. <新設 94·12·22>

1. 합리적·효율적인 豫算管理技法
2. 地方財政運營狀況의 測定技法
3. 기타 國家의 실효성있는 地方財政支援方案

第3條 (會計年度 獨立의 원칙) ① 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② 당해年度내의 收入으로 經費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年度의 收入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·사용(이하 “繰上充用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繰上充用을 한 금액은 다음 年度의 歲入歲出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.

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繰上充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, 繰上充用을 한 때에는 市·郡 및 地方自治團體인 區(이하 “自治區”라 한다)에 있어서는 特別市長·直轄市長 및 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에게, 特別市·直轄市 및 道(이하 “市·道”라 한다)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歲入과 歲出의 會計年度 소속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4條 (出納閉鎖期限) 地方自治團體의 出納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로 閉鎖한다.

第5條 (會計의 구분) ①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.

②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·歲出로서 一般歲入·歲出과 구분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.

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.

第108條 (管理의 방법등)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·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,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.

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

第109條 (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)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勸과 協議하여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.

第110條 (基金의 運用등)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積貯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. <新設 91.12.31>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, 出納閉鎖後 3月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·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 <改正 91.12.31>

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

(주 56)

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

경 기 도

411-701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/전화 (0331)249-2871 /전송 249 - 2139 /담당 : 김봉수

문서번호 법무 11250 - 1617

시행일자 1996. 11. 7 (년)

발 음 받는곳참조

참 조 기획(감사)실장

| | | |
|------|---|--------|
| 선결 의 | 지 | |
| 집 | 시 | |
| 일자 | 결 | |
| 시간 | 개 | 제 13 조 |
| 번호 | 공 | |
| 수 | 발 | |
| 처리과 | | |
| 담당자 | | |

재산관리계장 김

제 목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표준(안) 정정통보

1. 도 건설 13900-1763(1996. 7. 2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표준(안) 중 제7조(결산 및 보고)의 일부 조항이 지방채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제5항, 제6항에 배치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통보 하오니 시군에서는 조례제정 입안시 유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표 준 안 (당 초) | 표 준 안 (변경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결산및보고)①기금운용관은 ----- | 제7조(결산및보고)①기금운용관은 ----- |
|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----- |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----- |
| ②시장은 ----- | ②시장은 ----- |
| 의회에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 | 의회에 <u>제출</u> 하여야 한다. |

경 기 도 지 사

받는곳 : 러

법무담당관 전결